

## 게 시 판

### ■ 공문시행

- 「행망용 PC이용 불만처리센터」  
설치 및 이용안내

###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령

### ■ 고시

- 무선호출국용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 무선종사자의 자격별정원 지정  
기준

#### ◎ 총무처 행정 12410-53

#### 『행망용 PC이용 불만처리센터』설치 및 이용안내 (시행일 96. 4. 30)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중인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의 효율적 운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 불만처리센터」를 설치·운용한다.

##### 1. 설치목적

-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의 품질 및 성능·규격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사항 처리

##### 2. 대상기기

-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준수한 제품으로 「Q」 표시를 획득한 행정전산망용 PC 및 프린터

##### 3. 불만처리센터에서 처리가능한 사항

- 표준규격과 상이하거나 성능이상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정당한 수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

#### 치 요구

- 기타 표준규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 4. 설치장소 및 연락처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원 및 출장소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본 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0343·55-7654~8
서 울 지 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3-17	02·337-2569
청 주 출 장 소	충북 청주시 운천동 1573	0431·65-5185
대 구 출 장 소	대구시 서구 내당4동 300-3	053·566-4605
부 산 출 장 소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603-4	051·866-7253
광 주 출 장 소	광주시 북구 중흥2동 369-1	062·526-8813

◎ 통상산업부령제 36 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일 96. 4. 23)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 1 항중 “1 만킬로와트”를 “10 만킬로와트”로 한다.

제 6 조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 21 조제 1 항제 7 호나목중 “용량 1 만킬로와트이상”을 “용량 1 만킬로와트이상 10 만킬로와트미만”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용량 10 만킬로와트이상 : 사용예정일 3년전

제 32 조제 1 항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에 관한 수리권허가서 사본

제 35 조제 2 항에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제 40 조제 4 호 및 제 5 호를 각각 제 5 호 및 제 6 호로 하고, 동조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 5 호(중전의 제 4 호) 가목중 “수전설비”를 “설비”로 하며, 동조제 6 호(중전의 제 5 호)중 “제 4 호”를 “제 5 호”로한다.

4. 송·변전설비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변전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제 51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 2 조제 2 항제 3 호의 건물에 설치된 용량 20 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와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및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제 55 조의 제목중 “방법”을 “방법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거나 전기설비 소

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한 경우로서 점검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검 실시기관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58 조제 3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설비	규 모	기술인력	자격기준
발 전 설 비	용량 50만킬로와트이상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동 일 분 야 기능사 1·2 급 또는 기 사 2급이상 이거나 동 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 무 한 자로
	용량 50만킬로와트미만-10만킬로와트이상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용량 10만킬로와트미만-1만킬로와트이상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서 통상산 업부장관이 지 정 하 는 기 관 또는 단 체 에 서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 하는 교육 을 이수한 자
	용량 10만킬로와트미만-1천킬로와트이상	전기분야 1명	
전기수용설비	용량 1 만킬로와트이상	전기분야 3명	
	용량 1 만킬로와트미만-5천킬로와트이상	전기분야 2명	
	용량 5 천킬로와트미만-2천킬로와트이상	전기분야 1명	

제 59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5 항중 “750 킬로와트”를 각각 “700 킬로와트”로 한다.

② 법 제 45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를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이하 “대행사업체”라 한다) 및 개인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8 의 2 와 같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인의 전기안전관리담당

자가 규모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8의 2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이하이어야 한다.

제 61 조제 2 항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 3 조제 4 항, 제 4 조제 2 항·제 3 항, 제 5 조제 1 항·제 2 항, 제 21 조제 1 항제 6 호, 제 23 조제 1 항·제 2 항 본문, 제 26 조제 1 항제 2 항, 제 27 조, 제 28 조제 1 항, 제 29 조제 1 항, 제 30 조, 제 32 조제 1 항, 제 34 조제 2 항, 제 36 조제 2 항, 제 38 조제 3 호, 제 39 조제 3 호, 제 46 조 단서·제 1 호 내지 제 3 호, 제 49 조제 1 항 전단·제 2 항, 제 56 조제 2 항 전단, 제 63 조제 1 항 본문, 제 66 조제 1 항 내지 제 4 항, 제 67 조제 1 항·제 4 항 및 제 69 조제 1 항·제 2 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 1 호 발전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	별표 3의 1과 동일	별표 3의 1과 동일(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
--------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기타점검사항란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 전기분야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란에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기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별표 8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고(고장)보고 사항의 제 10 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제 11 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 30 호서식 및 별지 제 32 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 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수력에

관한 수리권 허가서 사본

별지 제 33 호서식 및 별지 제 34 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 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서 사본

별지 제 1 호서식 내지 별지 제 3 호서식, 별지 제 12 호서식, 별지 제 13 호서식, 별제 제 15 호서식 내지 별지 제 24 호서식, 별지 제 26 호서식 내지 별지 제 30 호서식, 별지 제 32 호서식 내지 별지 제 35 호서식, 별지 제 41 호서식, 별지 제 43 호서식, 별지 제 47 호서식 내지 별지 제 50 호서식, 별지 제 67 호서식 및 별지 제 68 호서식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 13 호서식, 별지 제 15 호서식, 별지 제 18 호서식 내지 별지 제 24 호서식, 별지 제 26 호서식 내지 별지 제 28 호서식, 별지 제 33 호서식 및 별지 제 47 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지 제 29 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전정파)”를 “통상산업부”로 하고, 별지 제 30 호서식 및 별지 제 32 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 )”를 각각 “통상산업부”로 하며, 별지 제 41 호서식, 별지 제 49 호서식 및 별지 제 50 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전운파)”를 각각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지 제 67 호서식 및 별지 제 68 호서식 중 “참조 : 전력운영과장”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안전공사 및 대행업체의 각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개인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제 59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근간인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부고시제 1996-34호

**무선호출국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고시일 96. 4. 19)

무선호출국용무선설비의 세부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일반적 조건의 “다”호중 “자가통신업무용”을 삭제한다.

2항 송신기의 기술적 조건의 “가”호 “(2)”의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같은 항 “가”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파형식은 A1D, F1D, G1D, A2D, F2D, G2D, A3E, F3E, G3E일 것.

같은 항 “나”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파형식은 A2D, F2D, G2D, F3E, G3E일 것.

같은 항 같은 호 (2)의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무선설비형식 검정에 합격한 무선호출국용 선택호출장치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부고시제 1996-32 호

**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지정기준**

(고시일 96. 4. 16)

1. 전파법시행령 제 63조제 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조작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정원은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조작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나. 기술조작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대수별로 기술조작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다.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명

일 경우에는 1명은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파법시행령 제 6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격별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이상의 무선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관할체신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중 1의 무선국(주무선국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가) 주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은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나 동일 통신망으로 인접한 시·도에 설치 또는 상치하는 무선국일 것.

나) 무선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는 주무선국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도나 동일통신망으로 인접한 시·도에 소재하는 1의 사무소에 근무할 것.

2) 철도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이 2국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관할 체신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무선국을 관할하는 철도분소(지하철공사 포함)의 주무선국에서 관리할 경우 기술조작을 위하여 주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3)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구성한 조합이 택시호출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나. 다음의 무선국은 무선종사자의 조작범위에 의하여 각 장치에 해당되는 자격중 최상위급 1명을 정원으로 지정하되 동일한 이동체에 2국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때에는 단일한 무선국으로 본다.

1) 이동체에 설치한 무선국(제1종국 내지 제4종국의 선박국은 제외)

2)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통화만을 행하는 무선국

3)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다.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이상의 지구국이 설치장소가 동일하고 당해 무선국의 감시제어가 중앙집중방식인 경우, 중앙집중운용하는 무선국의 자격별정원은 전파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지구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라. 선박국

- 1) 선박국중 어선 또는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한 통신장의 자격은 전파법시행령 제 63조제 1항제 3호에 따른 별표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을 가진 바로 하위급의 자격으로 경감할 수 있다.
- 2) 무선전신설비와 GMDSS 설비를 동시에 설치한 선박국에는 이중주로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를 선박국의 자격별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방송국

- 1) 원격제어자동화시설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신소 또는 중계소에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 전파법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범위를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만을 지정한다.
- 2)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송신소 또는 중계소가 동일한 장소에 2국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급 1명을 지정하고 그외의 인원은 무선설비기능사 2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공중선전력이 500W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에는 무선종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 4) 텔레비전문자다중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 또는 초단파다중방송국과 초단파방송국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방송국에만 무선종사자를 지정한다.

바. 해안국

- (1) 2,182KHz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해안국은 전파통신기능사 3명을, 156.8MHz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일반해안국은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갑 3명을 지정하되, 양 주파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파통신기능사 3명만을 지정한다.
- (2) 2,182 KHz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어업용 해안국이 공중선전력 100 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파통신기능사 3명을, 공중선전력 100 W이하인 경우에는 전파통신기능사 2명과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갑 1명을 지정한다.
- (3) 27MHz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 운용하는 어업용해안국중 단독 해안국의 운용시간이 1일에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갑 2명과 무선전화를 1명

을, 1일에 16시간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갑 1명과 무선전화를 1명을 각각 지정한다.

- (4) 동일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해안국과 고정국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고정국의 무선종사자는 해안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법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2이상의 해안국을 동일한 시설자가 원격제어 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할 경우 원격제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해안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사.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이 2국이상인 경우 시설자는 각 항공기국에 선임되어 있는 무선종사자를 다른 항공기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 51조에 의한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를 받아 운용중인 무선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이 종전보다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동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

송수신기대수	정원	산 출 기 준	비 고
1~ 4	1	○ 배치하여야 할 자격별 인원은 전파법 시행령 제 51조와 제 1항에 따라 산출하고	○ 제 2항가호 2), 3)호의 경우 이 동하는 무선국은 송수신기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9	2		
10~ 15	3		
16~ 22	4		
23~ 30	5		
31~ 39	6	○ 각 장치에 따라 산출된 해당 자격자	
40~ 49	7	중 1명은 최상위급	
50~ 60	8	을 지정하고 나머	
61~ 73	9	지는 차하위급 장	
74~ 89	10	치에 해당하는 자	
90~ 110	11	격자순으로 지정한	
111~ 140	12	다.	
141이상	13		